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http://www.namwon.go.kr)

제34호 2018. 8. 3(금)

<b>선 람</b>	기관의 장

## 훈령

○남원시 훈령 제388호 남원시 가로등·보안등 관리 규정 ----- 1

## 고시

- 남원시 고시 제2018- 91호 사도개설 허가내용 고시 ----- 11
- 남원시 고시 제2018- 92호 제3종 시설물의 지정고시 ----- 12
- 남원시 고시 제2018- 93호 남원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재고시(남원 예촌마당 조성사업) ----- 13

## 공고

○남원시 공고 제2018- 1272호 도로공고(운봉읍 신가리 산55-1) ----- 16

## 예규

○남원시 예규 제22호 남원시 내수면어업 관리 지침 일부개정지침 ----- 17

회 람										
--------	--	--	--	--	--	--	--	--	--	--

남원시 가로등·보안등 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8년 08월 03일

남원시 훈령 제 388 호

**남원시 가로등·보안등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원시 관내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등”이란 도로 폭 8미터 이상의 주요간선 및 지선도로에 설치된 등과 집단으로 설치(기존시설 포함)되어 있는 등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가로등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민편익에 제공되는 일체의 등기구 시설을 보안등이라 한다.

**제3조(설치 등)** ①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가로등”이라 한다)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다.

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가로등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로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로등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가로등은 관련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기준)** ① 가로등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시공업체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지정
2. 소요자재는 KS 표시품, 규격품, 승인품을 사용
3. 가로등은 교통량 및 등의 밝기에 따라 최소거리 50미터 이내 간격으로 하고 도로나 교량의 한쪽 또는 양쪽에 설치
4. 보안등은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100미터 간격으로 하고 경사지, 커브길, 골목 등 취약지역은 주변사향을 고려하여 설치
5. 점멸장치는 지상 1.5미터 이상 2.0미터 이하의 높이에 조도식이나 전자식 자동점멸기를 설치하며 부득이한 장소에는 수동 스위치 설치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사정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을 따로 정한다.

**제5조(설치 우선순위)** 가로등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건·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수해가구가 많은 지역
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4.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설치 제한)** 가로등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 (집 마당, 축사, 사업장, 비닐하우스 앞 등)
2. 독립가구의 막다른 골목길 (단,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주민요구에 따라 이설 또는 철거된 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장소
4.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
5.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농작물 피해, 수면장애, 토지의 사용제한 등)
6. 보안등 설치 목적 이외의 장소 (등산로, 산책로, 공원, 임도, 농로, 학교, 관공서 등)
7. 그 밖에 시장이 가로등 설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곳

**제7조(신청 절차)** ① 가로등은 읍·면·동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사유지이거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붙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지 이외에 가로등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민원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제8조(비용부담 등)** ① 가로등 설치와 유지관리에 따라 비용과 전기 사용료는 시장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수혜자(공공기관,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업소 등)가 설치한 가로등은 수혜자가 부담한다.

**제9조(관리자 지정)** ① 시장은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유지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시장은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유지관리)** ① 시장은 가로등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수를 위해 단가 계약을 통해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 유지관리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유지보수 업체로 하여금 선 보수하게 하고 수리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 한다.

③ 가로등 유지 보수 시 관급자재가 부족할 경우에는 유지보수 업체로 하여금 사급자재로 사용토록 할 수 있다.

④ 가로등은 일몰 후 점등하고, 일출 전 소등을 원칙으로 점·소등 시간을 조정 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로등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⑥ 고장신고 등 유지관리에 용이 하도록 가로등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한다.

**제13조(정기점검)** 가로등의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가로등의 정기점검과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시스템 운영) 가로등의 신설, 고장신고, 보수이력, 자재관리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여건 등의 변화로 기존 가로등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으로 가로등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고장 등의 존폐) 시장은 가로등의 고장 등이 발견 시 존치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불필요한 등은 폐쇄하고, 필요한 등은 신속히 고장수선을 하여야 한다.

제17조(고장신고 처리) 시장은 가로등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고장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유지보수 업체에 연락하여 신속히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가로등 설치(신설, 이설) 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

설치 위치(주소)	
가로등 수해가구 및 주민수	
설치(신설, 이설) 검토의견	
인근주민(농작물) 피해여부	
동의서 필요여부 등	
우선순위 (2개 이상 신청할 경우)	

- ※ 붙임 : 1. 위치도 1부  
 2. 현장사진 1부  
 3. 동의서 부(필요한 경우)

년      월      일

검토자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읍·면·동장                                    (직인)

남 원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가로등 설치 동의서(제7조제1항 관련)

가로등 설치 (신설·이설) 위치	남원시
----------------------	-----

본인 소유 토지(인근)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에 동의하며, 가로등으로 인한 제  
반문제(수면장애, 농작물 피해, )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위 동의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인)	생년월일	
소유 토지 현황	남원시		

남 원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 가로등 관리대장(제12조제5항 관련)

관 리 번 호	설 치 위 치	도 로 명	종 류	용 량 (w)	점 등 방 식
수 리 현 황		(전 경 사 진)			
일 자	수 리 내 역				

[별지 제4호 서식]

가로등 표찰(제12조제6항 관련)

(예시)



남원시 가로(보안)등

예) 운봉

관리번호 예)178

고장신고 063-620-○○○○

[별지 제5호 서식]

## 가로등 고장신고 접수 처리부(제17조 관련)

접수일자	신 고 자		가로등 위치		고장내용	완료일자
	성 명	전화번호	주소(지역)	번호		

남원시청 고시 제2018 - 91호

## 사도개설 허가내용 고시

「사도법」 제4조에 의하여 사도개설 허가가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위치 : 남원시 갈치동 산59-6번지 외 3필지
2. 사업목적 : 태양광 신축부지 조성에 따른 진·출입로를 위한 사도 개설
3. 공사개요 : 연장 L=158.0m, 폭 B=4.0m (Con`c 포장)
4. 공사시행기간 : 2018. 08. ~ 2019. 07.
5. 공사실시방법 : 토목공사 일반시방서에 의거 실시
6. 허가기관 : 남원시청
7. 허가년월일 : 2018. 07. 30.
8. 피허가자의 주소·성명 : 박\*란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로)
9. 기타사항 : 사도설치 허가사항 조건에 준함

2018년 08월 03일

남 원 시 장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남원시 고시 제2018-92호

##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1일

### 남원시청 도시과의 장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장애인종합복지관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면 닭퇴안길 87	주민복지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 제2018-45호) 별표 31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남원시 고시 제2018-93호

## 남원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재고시 (남원 예촌마당 조성사업)

남원 예촌마당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변경)고시합니다.

남 원 시 장  
2018년 8월 3일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문화시설)  
나. 사업의 명칭 : 남원 예촌마당 조성사업

### 2. 사업의 위치 및 규모

- 가. 위 치 : 남원시 월매길 12번지  
나. 사업규모

구분	조성계획면적(m <sup>2</sup> )	비고
계	3,380	
물레방아갤러리	1,118	
사랑이야기관	300	리마인드웨딩 체험실, 여성친화공간
노닐마당	650	바닥분수, 그늘막쉼터
이벤트존	300	사랑이야기관과 연계한 스몰웨딩, 프로포즈 존
캐릭터존	250	국악기캐릭터 설치, 트릭아트 포토존
약속정원 및 조경	762	언약의 퍼걸러, 사랑의 자물쇠 담장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남원시장(관광과)  
나. 주 소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 4.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19. 12. 31

##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 토지조서

연번	행정구역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종류 및 내용	
	합계			1,969	1,762						
1	남원시 쌍교동	255	도	13,684	68	국(건설부)	-				
2	남원시 쌍교동	260	대	1,053	1,053	남원시	-				
3	남원시 쌍교동	263	대	4	4	남원시	-				
4	남원시 쌍교동	264	도	73	73	국(건설부)	-				
5	남원시 쌍교동	265	대	203	203	남원시	-				
6	남원시 쌍교동	266	대	413	413	소**	남원시 쌍교동 2**				
7	남원시 쌍교동	267	대	162	162	남원시	-				
8	남원시 쌍교동	268	대	3	3	윤**	남원읍 천거리 *	삼**** 주식회사	수원시 매탄동 416	근저당권	
9	남원시 쌍교동	269	대	50	50	김**	남원시 쌍교동 2**				
10	남원시 쌍교동	270	대	13	13	김**	"				
11	남원시 쌍교동	271	대	10	10	김**	"				
12	남원시 쌍교동	272	대	7	7	김**	"				
13	남원시 쌍교동	282	대	364	364	김**	남원시 월락동 부영** ***동****호				
14	남원시 쌍교동	284	대	46	46	남원시	-				
15	남원시 쌍교동	288	대	251	251	남원시	-				
16	남원시 쌍교동	289	대	180	180	남원시	-				
17	남원시 쌍교동	290	대	195	195	남원시	-				
18	남원시 쌍교동	291	대	106	106	남원시	-				
19	남원시 쌍교동	292	대	17	17	남원시	-				
20	남원시 쌍교동	293	대	111	111	남원시	-				
21	남원시 쌍교동	293-1	도	8	8	남원시	-				
22	남원시 쌍교동	342	도	545	43	국(건설부)	-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 쌍교동 266

연번	행정구역	지번	지목	물 건				소유자		비 고
				물건명	구조 및 규격	면적수량	단위	성명또는 명칭	주소	
1.	쌍교동	266	대	주택	목조/기와 (강판지붕)	51.98	m <sup>2</sup>	소**	전북 남원시 쌍교동 2**	
				주택	시멘트블럭조/세와	72.45	m <sup>2</sup>			
				까대기 (화장실및 보일러실)	목재/강판	37.28	m <sup>2</sup>			
				가추	목조/슬레트	5.44	m <sup>2</sup>			
				가추	목조/함석	8.00	m <sup>2</sup>			
				화장실	블럭/슬라브	3.68	m <sup>2</sup>			
				까대기(창 고)	블럭/슬레트	8.19	m <sup>2</sup>			
				욕실	블럭/슬레트	3.72	m <sup>2</sup>			
				바닥	보도블럭	187.09	m <sup>2</sup>			
				대문1	철재	3.42	m <sup>2</sup>			
				대문2	철재	1.35	m <sup>2</sup>			
				수도간		1	식			
				장독대		1	식			
				담장	브럭	15	m			
				화단1	블럭	9.79	m <sup>2</sup>			
				화단2	블럭/돌	25.38	m <sup>2</sup>			
				철쭉		2	주			
				보리수		2	주			
				대추		3	주			
				오렌지수		1	주			
				동백		3	주			
사철		2	주							
라일락		1	주							
목단		1	주							
감나무		1	주							
박태기		1	주							
석류		1	주							
동산이전비		1	식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 쌍교동 269

연번	행정구역	지번	지목	물 건				소유자		비 고
				물건명	구조 및 규격	면적수량	단위	성명또는 명칭	주소	
2	쌍교동	269	대	주택	목조/시멘기와	44.59	m <sup>2</sup>	김**	전북 남원시 쌍교동 2**	
				창고	블럭/슬라브 (계단포함)	3.30	m <sup>2</sup>			
				가추	목조/슬레트	6.00	m <sup>2</sup>			
				바닥	콘크리트	26.11	m <sup>2</sup>			
				대문	철재	3.00	m <sup>2</sup>			
				담장	브럭	15	m <sup>2</sup>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 쌍교동 282

연번	행정구역	지번	지목	물 건				소유자		비 고
				물건명	구조 및 규격	면적수량	단위	성명또는 명칭	주소	
4	쌍교동	282	대	가추	목조/슬레트	10.44	m <sup>2</sup>	김** 또는 강**	전북 남원시 오들 1 길 ** 또는 전북 남원시 쌍교동 2**	
				홀	철파이프하우스	44.64	m <sup>2</sup>			
				화장실	목조슬레트	2.76	m <sup>2</sup>			
				담장	함석	22.30	m <sup>2</sup>			
				관정(가정용)		1.00	식			
				보리수나무		1.00	주			



◎ 남원시 공고 제 2018 - 1272호

## 도 로 공 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1일

남 원 시 장

○ 도로지정 공고내역

지정 번호	대 지 위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번호	도로 길이 (m)	도로 너비 (m)	도로 면적 (㎡)	이해관계인		
							지 번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2018-1 5	남원시 운봉읍 신기리 산55-1	김*식	2015-건축과- 신축신고-279	325 20	8.76 1.9	2,811 38	운 봉 읍 신 기 리 산 56, 산 56-2	2,811 38	오*현 오*임

남원시 내수면어업 관리 지침 일부개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8년 08월 03일

남원시 예규 제 22 호

**남원시 내수면어업 관리 지침 일부개정지침**

남원시 내수면어업 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을 “「내수면어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의”를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으로, “「내수면어업법」 제10조의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한 후 같은 순위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을 “법 제10조에 따른 우선순위 대상자를 적용하며, 비 우선순위자는 별표 3”으로 한다.

**제5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만70세”를 “만 75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생계수단이 농어업 외 타 업종으로 전업하여 종사하고 있는 사람

**제6조** 중 “사항은 「내수면어업법」 ”을 “사항은 법”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은 삭제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내수면어업 허가·신고장소

권역		위치	연장
계		4개소	68.3km
국가하천	섬진강	대강면 월탄리 741(순창군 경계)부터 송동면 세전리 1336-77(하도보)까지	21.8
	요천	천거동 238-1(승사교 금암보)부터 송동면 세전리 1336-77(하도보)까지	14.1
지방하천	요천	산동면 월석리 749(월석교)부터 이백면 척문리 832-248(요천교)까지	12.8
	람천	운봉읍 행정리 535-1(엄계교)부터 산내면 백일리 518(해탈교)까지	19.6

[별표 2]

## 내수면어업 허가·신고정수

권역		총계	어류				패류	
			소계	투망	자망	연승 (주낙)	소계	형망
총계		32	18	4	10	4	14	14
국가하천	소계	28	16	3	10	3	12	12
	섬진강 요천	28	16	3	10	3	12	12
지방하천	소계	4	2	1		1	2	2
	요천	요천, 람천(2)					2	2
	람천	2	2	1		1		

※ 어업의 종류별로 1명당 1건만 허가·신고

※ 설정근거 : 남원시 내수면 생태 및 어족자원실태조사 용역(2017년)

[별표 3]

## 허가·신고 우선순위 평가 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계	100점	
생 계 관 련	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30점</li> <li>○ 차 상위계층(생계곤란 자) : 25점</li> <li>○ 비 수급권자 : 15점</li> </ul>
부 양 가 족	25점	(만18세 미만, 60세 이상 직계 존·비속으로 주민등록에 의한 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인 이상 : 25점</li> <li>○ 4인 : 22점</li> <li>○ 3인 : 19점</li> <li>○ 2인 : 16점</li> <li>○ 1인 : 13점</li> <li>○ 없음 : 10점</li> </ul>
장 애 인 (조업가능자에 한함)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급 : 15점</li> <li>○ 3급 : 13점</li> <li>○ 4급 : 11점</li> <li>○ 5급 : 9점</li> <li>○ 6급 : 7점</li> <li>○ 비장애인 : 5점</li> </ul>
남원시 거주기간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 이상 : 20점</li> <li>○ 9년 : 18점</li> <li>○ 8년 : 16점</li> <li>○ 7년 : 14점</li> <li>○ 6년 : 12점</li> <li>○ 5년 : 10점</li> <li>○ 4년 : 8점</li> <li>○ 3년 : 6점</li> </ul>
신청자 연령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세 이하 : 10점</li> <li>○ 31~40세 이하 : 8점</li> <li>○ 41~50세 이하 : 6점</li> <li>○ 51~60세 이하 : 4점</li> <li>○ 61~74세 이하 : 2점</li> </ul>

## ※ 가점사항

- 남원시 내수면 어업계 회원 : 5점(투망어업)

▷ 신청한 어업 종류와 현재 가지고 있는 어업 종류가 동일하여야 인정

## ※ 동점자 우선순위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2. 차 상위계층(생계곤란 자)
3. 부양가족 수 (만18세 미만, 60세 이상 직계 존·비속)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적용) 이 지침은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 및 제11조 제1항에 따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내수면어업 허가·신고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적용한다.</p>	<p>제2조(적용) ----- 「내수면어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 ----- ----- -----.</p>
<p>제4조(내수면어업 허가·신고 처리) ① (생략) ②내수면어업 허가·신고는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3년 이상 거주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접수받아 「내수면어업법」 제10조의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한 후 같은 순위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평가결과를 토대로 처리하여야 한다.</p>	<p>제4조(내수면어업 허가·신고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 법 제10조에 따른 우선순위 대상자를 적용하며, 비 우선순위자는 별표 3의-----.</p>
<p>제5조(내수면어업 허가·신고 제한) ① (생략)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내수면어업 허가·신고를 제한 하여야 한다. 1. <u>어업을 생업목적으로 종사하지 않는 사람</u> 2. 3. <u>삭 제</u></p>	<p>제5조(내수면어업 허가·신고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u>&lt;삭 제&gt;</u></p>

4.·5. (생략)

6. 미성년자 또는 만70세 이상  
인 사람

7. 어선을 이용하여 어업에 종  
사하려는 사람

<신설>

제6조(준용)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이외에 내수면어업 허가·신고  
에 관한 사항은 「내수면어업  
법」과 「수산관계법령 위반행  
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  
다.

4.·5. (현행과 같음)

6. ----- 만 75세 ----  
-----

<삭제>

8. 생계수단이 농어업 외 타 업  
종으로 전업하여 종사하고 있  
는 사람

제6조(준용) -----  
-----  
----- 사항은 법-----  
-----  
-----  
-----  
-----  
-----